



■ 정책자료 2014-03

##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임완섭 · 이현주 · 김근혜

**【책임연구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신뢰 제고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공저)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자료 2014-03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저자 임완섭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정가 비매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222-6 93330

# 목 차

제1장 개요 .....	1
제2장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취합안건 요약 .....	9
1. 사각지대와 긴급대응서비스 제공의 취약점 .....	11
2. 복지와 고용(자활 및 고용지원)간의 협력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개선방안 .....	12
3. 탈수급 이후 이행급여 전환의 한계 .....	14
4.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자율재량 부족 .....	16
5. 중앙·시군구·읍면동·복지관·자활센터 등 전달체계간 협력제고방안 .....	17
6.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개선방안 .....	19
제3장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주제별 취합안건 요약 .....	21
1. 사각지대와 긴급대응서비스 제공의 취약점 .....	23
2. 복지와 고용간의 협력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개선방안 .....	34
3. 탈수급 이후 이행급여 전환의 한계 .....	45
4.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자율 재량 부족 .....	52
5. 중앙, 시군구, 읍면동, 복지관, 자활센터 등 전달체계간 협력제고방안 .....	60
6.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관련 개선방안 .....	66
부록1 제1차 서면의견 .....	73
부록2 1, 2차 오프라인 토론 회의록 .....	90





# 제1장

## 개요



##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이후 약 15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도입 및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건강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효과성·적정성을 제고해야 함.
-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다양한 복지정책 영역에서도 집행 및 성과평가 등에 의한 정책 간 통합 연계 및 정합성 제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조하고 있음.
- 2013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현장 중심의 정책수립 및 평가가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정책집행 과정 및 성과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중심의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지역복지 관련 담당 조직 및 인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효율성·효과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기초자료와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 등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2. 주요 사업내용

### □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구성

#### ○ 5기 기초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신규 위촉

(1기 2008~2009년, 2기 2010~2011년, 3기 2012~2013년, 4기 2013년 활동)

- 일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와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중심으로 약 40명의 규모로 구성하여 위촉
- 기존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 중 포럼 및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 및 각종 연구용역 수행 시 기여한 현장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재위촉
- 시도, 지역유형 및 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영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신규 전문위원을 추천받아 임기 1년(2014)의 제4기 전문위원 위촉

### □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운영 및 취합 안전을 통한 자료집 작성

○ 이전 포럼들이 오프라인 중심의 운영이었다면 이번 포럼은 기존의 워크숍 개최 등은 유지되지만 기초보장 관련 주요 현안에 관련한 안전 취합을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하며 취합된 안전을 정책 자료로 발간할 예정이다.

○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은, 수시로 개최되는 안전 자료 취합 및 오프라인 워크숍에 참석,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 평가 및 조정 과정 및 관련 연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책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정책수립 및 평가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정책추진 현황 및 쟁점을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와 공유 및 확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홍보 기능도 담당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포럼 참여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정책자료로 구성하여 결과 공유



### 3. 기대효과와 의의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의 전달체계 및 지자체 집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제도 효율성, 효과성, 적정성 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 일선 지자체의 현장 중심의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포럼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장성에 기반을 둔 정책집행 및 통합조정에 기여하여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의 구현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함.
- 사회정책연구본부의 중요한 연구업무 중 하나는 국민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변화를 파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수행 예정인 다양한 기본연구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수탁 연구 등에 있어서 다양한 양적·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의 현실성 검증을 위한 현장 전문가들의 비판적 의견을 수렴, 이를 연구에 반영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여함.
    - 이는 일선 지자체 및 민간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정책수립의 현장성 강화 및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4. 주의 사항

- 본 자료는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에게 받은 안건을 편집하여 주제별로 ‘관련 상황’과 ‘현장 제언’으로 구성한 것으로, 연구진이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 것이 아님을 밝혀둠.
- 현장 모니터링 전문위원들로부터 취합된 의견을 자료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 다만, 주제별 편집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주제와 연결성이 약한 부문 그리고 감정적인 내용들은 자료집의 성격상 제외되었음을 밝혀둠.

#### 4. 2014년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번호	성명	시도	근무지 및 부서	구분
1	강전하	강원도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남궁 명	강원도	홍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황재영	강원도	강릉시청 주민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노미경	경기도	의왕시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서경애	경기도	광명시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	송원찬	경기도	수원시지역사회협의체	사회복지관련기관
7	이상복	경기도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련기관
8	박철상	경기도	의왕시 사랑채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련기관
9	이승진	경상남도	진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	이동형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	송명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2	서유미	광주광역시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련기관
13	김성희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4	최일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	김영리	서울특별시	서울관악고용센터	사회복지관련기관
16	김정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7	문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8	송해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교육복지재단(파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9	신희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복지자원관리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0	최강아	서울특별시	노량진2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1	김채연	서울특별시	불광1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2	정완출	서울특별시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련기관
23	임영란	서울특별시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련기관
24	최복렬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일반행정직공무원
25	조영정	서울특별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복지관련기관
26	최경애	인천광역시	인천고용센터 취업지원과	사회복지관련기관

번호	성명	시도	근무지 및 부서	구분
27	최영숙	인천광역시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련기관
28	이승우	인천광역시	인천남구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련기관
29	박성렬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0	백화숙	전라남도	목포시 목원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1	곽동순	전라북도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2	이명숙	전라북도	임실군청 주민생활복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3	이인숙	전라북도	완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4	김영순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5	김근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6	황영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7	변인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8	곽영수	충청남도	공주시청 사회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9	김연실	충청남도	서천군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0	김영숙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1	염옥경	충청남도	서천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련기관
42	차진아	충청북도	충북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5. 2014년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일정

날짜	활동 사항
2014년 4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위촉식 및 제 1차 포럼</li> <li>○ 기초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으로 42명 위촉</li> <li>○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관련 주제에 대한 서면의견 제출 및 이에 대한 토론, 향후 일정 논의</li> </ul>
2014년 5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서면의견 제출</li> <li>○ ‘사각지대와 긴급대응서비스 제공의 취약점’과 ‘복지와 고용(자활 및 고용지원)간의 협력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서면의견 제출</li> <li>○ 안전(1) 10건, 안전(2) 10건이 취합되어 총 20건의 서면의견 취합</li> </ul>
2014년 7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 서면의견 제출</li> <li>○ ‘탈수급 이후 이행급여 전화의 한계’와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자율재량 부족’에 대한 서면의견 제출</li> <li>○ 안전(1) 9건과 안전(2) 7건으로 총 16건의 서면의견 취합</li> </ul>
2014년 8월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보장 모니터링 워크숍 개최</li> <li>○ 모니터링 포럼 취합 안전 검토 및 토론</li> </ul>
2014년 10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서면의견 제출</li> <li>○ ‘중앙, 시군구, 읍면동, 복지관, 자활센터 등 전달체계간 협력 제고방안(협력의 장애요소 제거 및 관계 재정립 사항 등)’와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서면의견 제출</li> <li>○ 안전(1) 6건, 안전(2) 5건으로 총 11건의 서면의견 취합</li> </ul>



## 제2장

###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취합안건 요약



# 2

##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취합안건 << 요약

### 1. 사각지대와 긴급대응서비스 제공의 취약점

#### ▣ (현황) 긴급대응서비스와 사각지대 발굴사업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나 자원 및 예산이 부족하고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

##### □ 자원 및 예산 관련 문제

- 공적서비스와 민간자원의 부족 및 있는 자원에 대한 실무자의 인지부족, 과도한 업무부담, 실적 중심의 사업추진 등으로 시의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약 300만원정도의 일시적 지원으로 생계의 어려움에서 탈피하기는 힘들며, 근본적으로 예산액이 부족함.

##### □ 신청 기준 및 지원 절차상의 문제

- 대상자의 경우 지원사유 부적합, 지원서류 미비, 소득 및 재산기준 그중 특히 금융기준 초과로 공급자 측면에서는 환수의 부담으로 엄격심사로 선정 탈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지원법으로 긴급생계지원이 이원화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됨.
- 현장에서 대부분의 지원은 의료비지원서비스이며, 이미 복지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기초수급자)가 많아 사각지대해소 취지에 미흡함.

##### □ 민관의 개별적인 수급자 발굴 시스템으로 협력이 어려우며, 중복 발생

#### ▣ (현장제언) 지원조건 완화를 위해서는 예산확대가 필요하며 지원조건 완화, 구비서류의 간소화, 담당자 자율재량권 및 민관협력 확대가 필요

##### □ 지원조건 완화와 예산 확대

- 엄격한 지원조건 완화의 필요조건은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예산의 증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비지원 확대 필요
- 신청 기준 및 지원 절차 현장 제언
  - 대상 선정에 있어 엄격한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구비서류의 간소화(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포함) 및 담당자의 자율재량권 확대가 필요
  -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긴급복지 소위원회를 두어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은 향후 논의 필요)
- 관련 부서간 행정기능 효율화(통합) 및 민관 협력 확충
  -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망 강화
    - 경찰서, 소방서, 경로당, 종교단체, 병원, 복지관,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일선기관과 사례 공유 및 협조
    - 민관에 통합된 매뉴얼과 교육 필요, 위기상황발생시 주민센터와 119센터, 경찰서와 핫라인 구축
    - 담당자 역량강화와 사례관리 인력 정규직화, 공공과 민간과의 정보공유, 민과 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통합사례회의 개최 필요 등
- 사후관리 강화로 인한 필요 이상의 서비스 제공 제한(특히 의료서비스 부문)

## 2. 복지와 고용(자활 및 고용지원)간의 협력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개선방안

- ▣ (현황) 복지부와 고용부의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이 있어 부처간 역할 모호성과 경쟁관계 측면의 부각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상호 협력 체계 미비함. 한편 시군구에 배치된 자립지원직업상담사의 역할이 모호하며, 정보지원의 공유가 필요한 상황임
- 복지부의 정책대상자의 경우 근로의욕 미약, 특히 농어촌지역에 근로능력 및 의



육 미약자 많음.

□ 부처간 사업 역할의 모호함

-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에 있어 협력보다 경쟁의 관계가 부각되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서비스 질적 저하를 야기
-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와 자활기관협의체 역할의 중복
- 자활 의뢰시 절차상의 문제로 여러 담당자와 중복적 상담을 거쳐야 하는 문제

□ 사회정보통합시스템의 정보를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적문제로 인해 활용 제약 큼

□ 시·군·구의 자립지원상담사 역할의 모호성과 한계, 재배치 등

- 자립지원상담사의 역할이 초기상담 및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외는 어려우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업무와 상당부분 중복됨.
-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지자체 근무 시 정체성 혼란과 재량권 미약

□ 자활사업 시행에 있어 농촌지역의 어려움

- 직업훈련인프라 부족, 접근성의 문제, 취업처 발굴의 어려움
- 해당지역 담당자가 부재하여 인근 지자체 담당자가 관리하는데, 관리소홀(전화상담 위주)로 성과미비

■ (현장제언) 부처간,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담절차를 간소화시키지만 상담의 심도를 강화, 또한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자활의욕 고취, 근로능력 미약자가 많은 농어촌에 대한 방문상담 확대, 각 전달체계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전산망 활용 및 이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필요

□ 부처간, 기관간 협력 강화

- 부처간(고용부, 노동부) 확실한 역할분담과 정보공유 필요
- 고용기관과 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조 강화, 예를 들어 자활사업과 연계된 고

용센터와 희망리본, 직업상담사 등이 주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에 대한 공유와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함.

- 한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체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중복적인 상담을 지양하고, 신청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상담필요

□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자활의욕 고취

- 취업실적을 중시하기보다는 통합적 사례관리와 취업교육을 통해 자활의지를 높이고, 프로그램 종결 후 사후 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재진입을 방지해야 함.
- 수급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 시 근속기간에 따른 성공금 지급이나 기존 수급액의 일정액을 생계비로 지원하는 방안 제시

□ 농어촌에 적합한 서비스 필요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활대상자에게 자활서비스의 시간적, 거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통비 보조 또는 출장 직업상담사 필요

□ 통합적 사례관리와 자활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희망리본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통합전산망 구축 및 활용 필요

### 3. 탈수급 이후 이행급여 전환의 한계

■ (현황) 이행급여가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소득인정액 150% 기준으로 인한 특례수급을 통한 소득역 전환상, 재수급의 빌미 제공 등의 문제점과 가구원변동 등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문제점 야기

□ 기존수급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과 함께,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오히려 보편적 복지 적용이라는 근본적 문제 제기

□ 행정절차상의 문제

- 이행급여특례 진입은 가구별로 2회로 제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적용제한이 자동 반영되지 않아 지난 상담이력을 일일이 살펴봐야 함.
  - 담당자 및 수급자의 거주지역이 바뀌면 지난 수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일반 수급자에서 이행급여로 이전 되더라도 별도의 통보가 없어 유형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유형 변화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같은 행정절차가 필요

□ 일반수급으로의 재진입 문제

-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가구원변동,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유를 들어 일반수급으로의 재진입하는 경우가 많음.
  - 추정소득 부과나, 수급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임의적 변동 등 담당자가 재량권을 남발하기도 함.

□ 수급조건관련 상황

- 근로능력 신규가구원에 의해 이행급여 특례 불인정은 가족간 부양의식을 약화
- 대부분 부양의무자 관계로 이행급여로 전환되며,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이행급여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소수
  - 부양의무자의 기존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인정하나 소득이 없던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불인정하는 것도 문제임.
  - 이행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수급권을 잃은 대상자를 위한 한시적 보호라는 인식이 있으며, 사각지대나 보장에 대한 보편적 의미는 낮음.

■ (현장제언) 각종 특례제도를 만들기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필요함. 근로능력가구원에게 근로능력가구원 진입시에도 가구구성요건 불충족을 적용시키지 말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의 경우도 기존에 소득이 있는 가구는 물론 없었던 가구도 동일하게 소득 150% 기준 적용

□ 근로능력자의 경우 '특례는 특혜'라는 주장과 탈빈곤에 필수적이라는 의견 양립

- 근로무능력가구에 근로능력자 가구원 진입에도 적용하여 가구구성 요건만 적용  
치 말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적용후 판정 필요
- 특례자의 교육급여 지원 연장 필요
-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의 경우도 기존에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물론 없었던 부양의무자 가구도 동일하게 소득 150% 기준 적용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2회 적용제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수정 필요
- 이행급여 특례자의 수급재진입을 막기 위해 고용-복지 사례관리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 및 취업연계관리 필요
- 보편적 복지 확대(부양의무기준 완화, 개편 급여 기준선 상향 등)

#### 4.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자율재량 부족

▣ (현황) 자율재량권 확대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이 있음.

- 자율재량권 필요 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관련, 현재 제도하에서는 실질적 부양 능력과 관련 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부양의무자 마저 빈곤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 또는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수급 신청을 포기하여 빈곤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음.
  - 동거의 사실혼 판단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의 자율재량권 필요
    - 제도 내에서는 수급자를 비롯해 긴급구호 대상자도 사실혼을 부부로 인정
- 자율재량권 확대 반대 의견
  - 자율재량권 확대는 권리와 함께 의무도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

이 더 심각히 발생할 것임.

- 사회복지사의 자율재량권을 인정할 경우 민원회피식의 ‘묻지마 복지지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 (현장제언) 정확한 제도의 적용과 재량이 필요한 경우의 구분 필요

- 제도의 정확한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필요한 경우와 재량이 필요한 경우(긴급지원 등)가 구분 될 수 있음.
-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 판단되는 경우 제도권 내 위원회 활용 또는 통장, 복지위원, 동북지협의체 등 지역주민의 확인 등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보호한다든지, 사회복지사들이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마련이 필요

### 5. 중앙·시군구·읍면동·복지관·자활센터 등 전달체계간 협력제고 방안

#### ▣ (현황) 민과 관의 수직적인 관계, 협력경험의 부재, 지원기반 부족, 정보공유의 어려움, 실적관리의 중복성 등은 민과 관의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위급 상황시 요양보호센터와 지자체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의 개인정보관리 강화로 민간에서는 기본정보도 제공 받을 수 없음.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민과관의 수직적인 관계, 협력경험의 부재, 민관협력을 위한 지원기반의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의 윈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동반자적 역할로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절실하지만 공공부문은 절차가 복잡하고 문턱이 높다는

평가를, 민간은 영리추구와 실적경쟁에 의한 양적확대 치중하는 인상을 주고 있음.

- 민과 관에 실적관리의 중복성이 존재

### ■ (현장제언) 탄력적인 협조체계 및 역할정립 필요

- 긴급상황에서는 민간 요청자의 신분확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민간에서 복지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파악한 부문은 지자체에 공유함으로써 민관의 협조체계를 효율화 시킬 필요 있음.
-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가 동시에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역할정립에 있어서도 민과 관의 분업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민관협력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필요하며, 민관협력 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필요
  - 민관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콘텐츠와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며,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기관의 특수성과 목적성을 실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민관협력기관의 자율소통 및 권위적 행태개선, 또한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소통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또한 각 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이양이 필요함.

## 6.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개선방안

### ■ (현황) 부정수급은 제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불신과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됨.

- 복지급여 지급부서와 부정수급 판단 및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환수 부서가 동일

-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률과 지침상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수급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권한이 크지 않으며,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도 쉬지 않은 상황임.
- 복지급여 수급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수급자 선정을 위한 업무지침에 있어서도 신중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제언) 부정수급 대응 방안

- 복지급여 지급부서와 부정수급 담당부서의 분리 필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확인조사 결과 사라져 매회 재조사
- 관리인력(통합조사관리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상대적 박탈감 존재
- 복지대상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해 실질적 권리구제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필요 있음.
- 부정수급을 조사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부정수급조사전담자를 두거나 담당자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신분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3장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주제별 취합안건 요약



# 3

##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 주제별 취합안건 요약

### 1. 사각지대와 긴급대응서비스 제공의 취약점

안전 2-1. 사각지대와 긴급대응서비스 제공의 취약점	
관 련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을 비롯하여 일련의 생계형 사건사고가 발생</li> <li>○ 이와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국가 사회보장에서 누락된 사례, 그리고 발굴된 사례에 대하여 기준 부적합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한 대응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음.</li> <li>○ 긴급급여 등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어려운 사례에 대하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li> <li>○ 일선에서 복지 및 복지관련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경험하였는지, 그렇다면 그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li> </ul>
관 련 제 도	<p><b>* 긴급지원제도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아래의 6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li> </ul> <p>〈6가지 위기상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li> <li>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li> <li>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li> <li>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li> </ol>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⑤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최저생계비 150%(1인기준 905천원, 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6천원)
- 재산: 대도시(13,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안건 제출자〉

노미경, 서경애, 이상복, 이승진, 송명희, 최일남, 김채연, 임영란, 최경애, 김연실

## 〈긴급지원제도 기준 충족의 어려움〉

### □ 관련 상황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긴급급여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었으나, 많은 신청자들이 긴급지원 사유 부적합, 금융관련 기준초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 긴급지원을 못하는 사유는 긴급지원 사유 부적합이 대부분이고, 금융재산 초과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긴급지원서비스 등의 공적서비스 지원에 대한 위기상황과 소득 및 재산 등 대상자의 상황 및 기준에 융통성이 없어 사각지대의 해소에 한계가 있음.
  - 우선지원 후 사후 확인하여 소득·재산기준 부적합 시 지원금을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 부적합으로 환수 되는 경우가 많음. 담당자 입장에서는 환수에 대한 부담으로 지원에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우가 있음.

### □ 현장 제언

- 아래 사유 이외에도 필요한 상황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준완화 필요

#### 〈6가지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복합적 사례로 사각지대로 진입한 가구에 대해서 다각적 지원필요. 일시적인 현금 긴급지원이외 지속적인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필요
- 재산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 필요, 재산의 특성상 긴급처분이 어려워 현금화 못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금융재산에서 당장 현금화하기 힘든 보험환급금에 경우에는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던지 아니며,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지원근거 마련의 어려움〉

#### □ 관련 상황

-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수입·재산현황과 소득증빙, 근로능력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진술만으로는 불충분 함. 기초수급자와는 달리 금융재산조회, 근로능력판단 기준이 자료요구가 어려움.
  - 위기상황에서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관련구비서류 과다로 신청을 포기하거나 시의적절한 서비스제공 불가
- 생계지원의 사유는 실직을 통한 지원신청이 대부분인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에 등에 종사하여 실직증명이 어려워 지원에 애로가 있음.

#### □ 현장 제언

- 신청 구비서류의 인정범위의 확대 필요.
  - 보건소 방문의사진료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 진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진단서의 효력인정
  - 상기 대상자의 경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원력이 없어 진단서 발급이 어려웠음.
- 지원 종류와 수준의 일괄적 적용에서 탈피하고 위기의 정도를 감안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민관 협력의 어려움 등〉

#### □ 관련 상황

-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 발굴 작업은 활성화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적합한 공적 서비스나 민간자원이 부족, 예산의 부족
  - 긴급지원사유가 충족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대상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나

그중 일부 민간 긴급지원(공동모금회)으로 연계지원하고 있음

- 민간(무한돌보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율방범대, 종교단체 등)자원 활용으로 상시발굴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민과 관이 따로 가는 발굴 시스템으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중복적인 업무 진행이 되고 있음.

#### □ 현장 제언

○ 사각지대와 긴급대응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과 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대상자 발굴과 함께 지원, 개입에 이르기까지 민과 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가 필요함.

- 민과 관이 함께하는 권역별 통합사례회의가 필요하며, 권역별 통합사례회의 개최 시 동센터를 복지허브로 구성하여 동별로 권역을 구분하여 긴밀한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사각지대 발굴인력은 공공인력만으로 어려우므로 다양한 민간자원의 발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망 강화,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가 필요.

- 경찰서, 소방서, 경로당, 종교단체, 병원, 복지관,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일선 기관에서의 사례 공유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

### 〈제도 운영의 효율화 필요〉

#### □ 관련 상황

○ 사각지대 긴급대응제도가 통합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상황별,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의료, 교육수준, 가정상황, 경제수준, 돌봄, 건강, 부양, 장애유형 등 다양한 문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

○ 사업별, 기관별(보건복지부, 시.군.구) 사업내용의 중복 발생, 현황실태조사의 경우 일원화가 되지 못하여 중복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비효율 발

생(위기가정실태조사를 동일한 시기에 관련기관이 중복 조사)

- 사회담당에게 필요에 의한 지원보다 무조건적인 대상자 발굴 실적 결과를 요구하는 행태가 존재함.
  - 유사한 사업의 관련부서별, 기관별 중복되어 경쟁하고 실적위주의 행태가 발견되고 있음.

□ 현장 제언

- 업무중복과 실적 중심의 업무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 조정기능 등 대책 마련 필요
- 통합화 필요, 일선기관의 중복업무로 시간낭비의 원인이 없도록 효율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자살예방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 등 사업을 하나로 합쳐 원스톱서비스 체계구축이 필요함.
- 현재 일선 담당자조차 산재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통합된 매뉴얼과 교육이 절실함.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은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 가장 주민과 밀접한 통장을 활용하여 긴급사항을 파악하고 즉시 긴급지원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긴급성을 인식하여 지원함이 필요함.

**<담당 인력 부족>**

□ 관련 상황

-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사례발굴능력이 약하고 지속적 관리의 어려움.
  - 초기 상담시 사회복지사가 과도한 업무부담 없이 충분한 상담자와의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사회복지분야에 인력이 필요함에도 총액인건비제로 묶어놓고 기간제근로자만 양산하여 표면적으로 인력이 없는 건 아닌데 업무는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현장 제언

- 사례관리 인력 등 기간제 인력의 정규직 전환으로 책임성 있는 업무수행 및 현장복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필요
- 민원인들도 가정방문을 사생활 침해로 여기고 꺼리는 경우가 많아 직원 채용 시 방문상담전담 사례관리사를 별도로 채용하였으면 함.

**<주거지원>**

□ 관련 상황

- 주거지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제공 가능한 임시거처가 없어 신청인에게 주거지원이 어려움.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현장 제언

- 주거지원의 현실화. 출소자, 노숙자의 임시거소 할 수 있는 권역별 소규모 쉼터나 그룹 홈을 두어 실질적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이것이 어려울 경우 숙박시설과의 연계 등 활용 가능한 주거 자원 확보를 의무화해야 함.

**<제도의 홍보>**

- 지원제도의 홍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공용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 준다면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례는 더 적어질 것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의 미인지로 제외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법 모색(버스형 방문, 지하철부스설치 등)

### 〈복지수요 급증에 대한 우려〉

- 반면 긴급복지서비스로 인해 복지에 대한 과다수요발생을 야기, 체납, 중복발생, 자립의지 등 약화를 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 현재 긴급지원서비스는 병이 발병하거나 진료가 이루어진 후 지원해주는 사후 서비스의 성격이 강해 사전적 안전 조치나 예방차원의 긴급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는 사각지대로 몰릴 위험이 있음.

### 〈의료 지원에 집중〉

- 의료비 지원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복지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란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지원율이 높은 의료비의 경우 병원 입원 중에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은 제도를 몰라도 병원원무과나 사회사업가가 챙겨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사례〉

- 위기상황(목디스크 발생)과 긴급대응서비스
  - 관련 상황
    - 위기 상황(목 디스크로 인한 마비로 간병 및 수술을 요하는 상황)으로 긴급 복지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불가 평가를 받음. 대상자에게는 커다란 질병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만성질환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불가
  - 현장 제언
    -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을 요하는 중한 질병, 실직에 대한 확인의 엄정성 등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구비서류 간소화, 담당자의 재량의 폭을 확대
    - 기준완화에 따른 충분한 예산확충 및 국비지원 확대 필요

## □ 출소자

## ○ 관련 상황

- 신청인은 2년 전 출소시에 긴급생계비 수급이력이 있으며, 1~2개월 내로 일자리 구할 의지가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기를 꺼려함.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소득원이 없어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와 주거지를 희망하여 긴급지원을 신청하고자 함.
-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생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우선 신청하여 불가 판정시에 지원이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의 경우 단기지원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수급이력이 있어 지급이 부적합함.
- 1년 이내의 소득재산자료가 없으므로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소득등급 판정 후 지원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지원 시까지 3주 이상이 소요됨.

## ○ 현장 제언

- 단기 지원 원칙 중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지원할 수 없음”의 명확화가 필요함. 출소자의 경우 몇 년을 단위로 구속과 출소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와 주거 지원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 몇 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긴급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도록 지침의 세분화명확화가 필요함.
- 심의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함.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 중 지침상 규정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출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신청하여 소득재산 조사 후 부적합 시 지원한다는 규정으로 실질적인 긴급 상황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지침상 규정되지 않은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긴급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와 같이 소위원회를 두어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강하는 것

이 필요함.

- 물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발히 개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또한 국민기초생활 업무담당자와의 연계 등의 문제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절차상 간소화가 가능하고 긴급복지를 위한 소위원회가 필요함.

#### □ 장기구직자

##### ○ 관련 상황

- 대출학력과 은행 입사경력에도 있지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주식으로 인한 부채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알콜의존과 대인기피증세 발생하여, 현재 생활비는 가족에게 받고 생활하고 있음.
- 고용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장기구직자들의 경우 앞의 사례처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대인관계기피로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 중 알코올이나 게임중독이 많으며,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상태로 지속적인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발생

##### ○ 현장 제언

- 행복(정신건강증진)지원 프로그램(가칭) 운영 :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으나 이용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가 없을 경우 사각지대에 있는 니트족 또는 장기실업자의 정신건강 및 올바른 생활습관을 습득할 수 있는 장기적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10단계로 행복지원프로그램(영국시행)를 단계별로 시행하여 왜곡된 사고에서 올바른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행동지원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심의위원회 구성 : 대부분 사각지대의 있는 외톨이형 장기실업자의 경우 주변사람이 사회복지사가 문제가 있는 이들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적 상태 및 정신건강 상태 등을 전문가심의위원회에서 진단 결과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함.

## 〈기타 의견〉

- 사회적 변화로 어떤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 해도 사각지대의 완전한 해소는 어려운 문제임. 핵가족화, 주거형태의 변화로 우리의 이웃이 없는 사회속에서 살아가고 있음. 매일 “이웃과 인사하기” 운동 전개 등으로 이웃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사각지대 발굴이나 긴급지원서비스의 효과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
  
- 개인정보, 인권 기준이 강화로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인권이 보호되는 측면도 있지만 긴급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도적인 기준에 걸려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판단으로 긴급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필요함.

## 2. 복지와 고용간의 협력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개선방안

안전 2-2. 복지와 고용(자활 및 고용지원)간의 협력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개선방안	
관 련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자활사업이나 기타 고용센터의 고용지원서비스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음.</li> <li>○ 근로능력을 높이는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과 동시에 근로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보건의료, 교육, 돌봄 등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들이 적지 않고, 한편 복지급여를 계속 수급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에 참여한 상황에 대하여 양방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li> <li>○ 각 영역에서 협력이 필요한 다른 영역이나 조직(고용분야는 복지분야, 복지분야는 고용분야의 고용센터나 자활센터 등)과 연계, 조정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협력이 어려운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황 파악이 필요</li> <li>○ 현재, 시군구에 배치, 활동 중인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긍정적 성과와 활동의 어려운 여건 등도 좋은 정보가 될 것임.</li> <li>○ 한편 농어촌의 경우에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나 협력, 통합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적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이 있음. 농어촌의 경우 양자의 협력이 어떠한지, 협력의 장애는 무엇인지, 필요한 협력의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선의 현실적 의견이 필요</li> </ul>
관 련 제 도	<p><b>* 자활사업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li> </ul> <p>〈자활사업 참여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li> <li>2.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li> </ol>

3.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의 역할**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 취업대상을 발굴하고 고용센터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로 의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의 주요 업무〉

1. 취업대상자 발굴 및 의뢰: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취업대상자 발굴
2. 기초상담: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기초상담
3. 취업적성평가 참여: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 면담, 취업적성평가 및 조건부과 내용 결정 의견서 작성
4. 개인별 자활지원 계획 수립 지원: 고용센터 의뢰 취업대상자 발굴 및 자활사례조정회의 운영 지원
5.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관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진행상황 관리
6. 취업 유·무 확인: 수급자 취업(소득·고용유지기간 등) 확인
7. 탈수급자 관리: 고용센터에 탈수급자 현황 제공

〈안건 제출자〉

노미경, 이상복, 이승진, 최강아, 김채연, 조영정, 최경애, 최영숙, 이승우, 김연실

## 〈낮은 근로 의욕, 자활·고용지원 사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

### □ 관련 상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도권 안에 안주 희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대상 참여자는 탈수급을 원하지 않고 수급자 유지를 목적으로 수동적 자활참여 및 취업의지 미약
  - 자활 의욕은 없으나, 자활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급여 제한으로 자활사업을 쇼핑하여 계속된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 후 다른 분야 교육희망

### ○ 관련사례

- 신청인에게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에게 연계함. 자활의욕이 낮아 즉각적인 취업교육이나 취업이 불가능하여 희망리본사업으로 배치함.
- 한 달가량 상담에 응하였으나 이후에는 불응, 희망리본사업 참여 중지함. 상담이 지루하고 하고 싶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울 듯 하여 불응했다함. 취업이 비교적 빠른 취업성공패키지 연계를 위한 상담을 권함.
- 역시 한달 가량 상담을 진행하다가 포기하였고 소득신고서를 작성한 후 조 건부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로 전환함.

### □ 현장 제언

- 자활상담 시 창업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음. 현재 창업보다는 취업지원의 비중이 더 크므로 창업지원을 더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의 성격이 비슷하여 기존에 희망리본사업에서 받았던 상담을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다시 받게 되어 만족도가 떨어짐.
  - 또한 서비스의 종결 후 충분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중도 탈락자에 대한 부담은 다시 읍면동 담당자에게 전가되고, 신청인은 취업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생계비를 적게 받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됨.
- 인센티브를 통한 자립지원제도 즉, 수급자 취업 시 근속기간에 따른 성공금 지급하거나 생계비 일부지원(기존 수급금 일정액 지급) 고려 필요



## 〈대상의 여건에 따른 지원 방향〉

### □ 관련 상황

- 근로 미약자의 경우 기초생활영위 국가보장,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 관심과 공동체 생활기반 마련 제도 미비하고 근로 능력 보유자의 경우 자활 역량에 따른 적정 프로그램 연계 미흡
- 고용센터를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장기방치 되고 있는 실정임.
  -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반시장에 경쟁하기에는 어려운 대상자들이 많음. 이들을 무조건적인 취업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이 달라져야 함. 연령이나 신체적인 이유로 근로미약자가 되는 경우, 연령이나 신체조건은 양호하지만 근로의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분류하여 교육이나 근로조건 제시가 필요함.

### □ 현장 제언

-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창출해 내는 것이 필요함.
- 희망리본사업의 경우에도 평가기준을 취업에 두지 않고 참여자의 정신건강상태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 희망리본사업에서 정신건강이 양호하게 되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연계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취업할 수 있는 장기적 프로젝트 사업 필요
  - 희망리본사업의 평가기준을 취업에 두지 않고 정신건강이 증진상태나 패키지에 의뢰한 건수 등으로 변경이 필요
- 근로능력은 있지만 간병·양육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보육시설이나 간병서비스 지원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조건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함.
  - 간병이나 양육은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 이유를 회피수단으로 삼는 경우들도 적지 않음.

- 근로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여 근로미약으로 노동시장으로 나갈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만 자활근로를 실시하여야 함.

### 〈농어촌 지역 특성〉

#### □ 관련 상황

- 농어촌지역으로 계절별 일시적인 일용, 노출되지 않는 소득수입 가능성, 일정 기간 지속적인 취업부담감 있어 자활참여도 낮음.
- 자활사업 지속적인 참여,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취업패키지, 희망리본 의뢰 등의 수요가 존재하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의뢰 관리와 전화를 통한 관리, 성과의 미비 등으로 불만 발생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근로유지형 사업 참여를 제외하고는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불가능함. 시간적·거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통비용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함.
- 농어촌 지역은 정상적인 근로능력자 부족, 일선 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도 90% 이상은 만성질환과 경계성 장애, 질병자가 다수, 인지능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근로능력있다고 볼 수 없음.
  - 이러한 분들이 취업패키지나 희망리본으로 의뢰했을 경우 방문상담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고, 전화 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적지 않은 대상이 전화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 현장 제언

- 농어촌지역은 인구구성의 특성상 취업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와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측면으로 자활사업을 유지, 발전시킬 필요 있음
- 농어촌 공동체적 가치 구현 지속 필요 : 주민의 사회적 참여 형성, 고용복지 지역 조직가 육성, 지역별 실천 활동 정기적 점검
- 지역 일자리를 발굴로 개인 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연계하고 표준화사업 위주

로 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적극 발굴

- 교통비 보조 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출장 직업상담이 필요함.

### 〈기관·부처간 협력〉

#### □ 관련 상황

- 연계, 조정 노력은 부처간 합의의 선행필요, 자활센터에선 자활사업 참여자도 부족한 상태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패키지나 희망리본에 참여함으로 양질의 자활참여자 구직난 있음.
  - 고용센터에서 우수한 조건부수급자 의뢰가 안 되고 취업이 어렵거나 경계성 우울증환자와 취업의지가 낮은 수급자가 의뢰되는 경향이 있음.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사업 집행 방식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음(복지부의 자활기관협의체와 고용부의 진단회의)
- 사전단계도입이전에는 참여자를 점수에 따라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참여할 수 있어 경쟁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협력의 어려움이 있었음.
- 기관별 사례별 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으며, 고용센터에 의뢰된 사례는 정보가 단절되어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큼.

#### □ 현장 제언

-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의 통합 또는 확실한 역할분담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두 사업이 지원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와 맥락은 같은 사업임.
  - 근본적으로 취업실적을 중시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사례관리와 취업교육을 통해 자활의지를 높이고 사후 관리를 통한 저소득층 재진입 방지가 중요
- 자활사업과 연계된 고용센터와 희망리본, 직업상담사 등이 주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에 대해 정보공유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부서별 실무자 교육을 병행하도록 실시하여 연속성을 갖도록 함.
- 민·관 협력 사업형태 구현 : 지역 민간 전문가 조직구성으로 소통체계 확립,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경험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적 관계 설정이 필요함.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통합, 통일적 실천전략 수립
- 고용센터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고유의 업무를 활성화함으로써 서로 필요에 따라 연계를 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필요한 시기임.

### 〈원스톱 지원〉

- 고용과 복지의 이원화가 아닌 관련 부처가 달라도 전달체계가 다르고 일선업무가 달라도 한번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복지지원센터, 자활센터 등 을 한 건물에 배치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하되 한 곳에서 통합상담이 가능하게 지원
- 주민센터에 취업상담사 배치 등을 통해 복지와 고용의 원스톱 지원
- 자활근로 등을 통해 근로 할 수 있는 빈곤층은 근로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 연계와 조정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 기구가 필요함.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 관련 상황
- 고용부는 적절한 자활경로 설정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시군구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배치함. 사회복지사가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세세히 상담 관리, 의뢰 및 사후 관리,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 지역내 고령화와 청장년층 도시로의 유입으로 근로가능자 소수와 근로능력이 가능자 부족, 인적자원 발굴의 어려움과 그리고 취업처 발굴과 적절한 직업훈련 인프라 부족으로 직업상담사로서 어려움이 많음
- 최근 대상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업무량이 급증함. 한편, 초기상담과 취업성

공패키지 연계외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자활사업업무담당자의 보조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게 됨.

- 직업상담사의 배치로 과거에 비해 자활상담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자활사업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연계된 기관에서 자활대상자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기관별 대상자 돌려막기가 되는 경우가 많음.
- 자립지원상담사의 긍정적 성과로 초기상담과 취업적성평가로 취업의지 있는 대상자 선별가능(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용이), 하지만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지자체 근무 시 정체성 혼란과 결정권 미약

□ 현장 제언

- 역할이 모호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계속 지자체에 배치하기 보다는 고용센터로 복귀시켜 조건부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지자체는 인원이 빠져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지자체는 지자체로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기초생활보장) 고용부 고용센터는 고용센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취업지원 업무) 것이 예산이나 사업의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임.
- 시군구에 배치하기 보다는 고용센터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실질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확충이 시급함.

**<취업우선지원 사업 1>**

□ 관련 상황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5월부터 전국 고용센터 126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 신규 기초수급자를 모두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 고용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1개월 과정)
  - 미취업시 집중 지원 프로그램 연계-취업성공 가능자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의뢰, 복합문제로 판단된 자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자체 재의뢰 후 자활 역량평가 등을 실시해 희망리본, 자활근로 등 특화사업으로 배치

○ 참여기관 간 협업 프로세스 현황

- 공무원 1인과 4개 참여기관(지역자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센터, 고용지원센터) 실무자 순환배치
- 내방객 대다수는 방문목적이 분명해 욕구확인 및 서비스기관 안내가 필요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상담과 안내가 가능한 전문적인 상담사는 부족
- 최초 방문자가 자신의 진짜 어려움을 상담창구에서 짧은 시간에 토로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 이와 관련 최근 운영매뉴얼을 논의 하면서 5분 이내에 내방객의 주요 욕구 확인을 주목적으로 창구운영 논의 중임.

○ 담당자가 고용복지 연계 실적을 정리해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있으나 고용복지 연계의 정의 및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모니터링과정도 없음. 또한 각자 다른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어 전산을 통한 업무 연계가 불가능함.

□ 현장 제언

-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 분석 필요
- 타 기관과 협조는 활발하나 지역자활센터와의 업무협조는 미흡, 이는 대상자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대상 특성에 맞는 통합서비스 표준모델이 필요함.
- 지역자활센터의 경험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적 관계 설정이 필요함. 또한 협력 연계와 조정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 기구가 필요함.
- 통합 전산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 제기

**<취업우선지원 사업 2 : 진단회의 및 자활기관협의체 운영관련>**

□ 관련 상황

○ 자활사업 배치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예외 없이 모두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를 진행하고 4주차 최종단계에서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를 실시하여 자활경로를 설정하도록 설계하였음.

- 이 진단회의에는 취업지원과장(위원장), 고용센터 전담자(필수), 지자체 자활담당 공무원(필수),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취업성공패키지 팀장 등 3인 이상 구성, 이 회의를 통해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경로를 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된 2000년부터 운영되어 온 “자활기관협의체”가 있음에도 사업 담당 부처인 고용부에서 고용센터에 또 다른 회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현장 제언

-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사전단계를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더라도 개인 및 가구여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역 대표자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활기관협의체”에서 프로그램 배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를 강화하고 그곳에 진단회의 기능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것이 협업이 어려운 형편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회의 및 협의 구조를 강화하고 사업 집행을 통한 실무적 접점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복지부의 자활사업 집행처와 고용부의 주요 자활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집행처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음.

#### 〈사례〉

##### □ 조건부 수급 관련

- 희망리본 사업 참여 중인 상기인은 모친 부양기간동안 조건부과제외자로 급여를 수급함. 그러나 모친이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간 급여를 받다 환수 조치됨. 조건부과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며, 이후 희망리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자활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음.
- 출소자로 3개월 조건유예기간 후 조건부수급자로 변경. 자활상담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조리사 준비를 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취업에도 성공하지 못함. 다시 희망리본 사업으로 사업 변경 참여. 자활상담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늘 상담 2차 통보에 응하고 있는 상태임.

- 자활상담을 통해 지역자활센터 택배사업 참여. 자활의지가 높은 편 이었는데 얼마 후 자신만 열심히 일하며, 동료들이 장애등록을 하면 일을 안해도 지원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우울증을 호소함.

□ 현장 제언

- 상기 3가지 사례를 보면 실제 3명 모두 자활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연령대에 상관없이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며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함.
  - 복지와 고용을 중앙통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ct의 자활의지를 높이는데 필요한 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자활의 주 사례관리자가 각 단계별 ct의 진행상황에 대해 상호신뢰를 갖고 같이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 자활사업과 연계된 고용센터와 희망리본, 직업상담사 등이 주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통해 정보공유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특히, 고용센터에 의뢰된 사례는 정보가 단절되어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큼
- 제도를 변경하여 연령별로 자활지원을 위한 최대 기간 설정 필요.
  - 근로역량이 높은 20~40대 조건부수급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와 단독 가구를 분류하여 자활기간을 정하여 자활 의욕 고취
  - 재취업하기 어려운 연령대(50대)는 중소기업 등 구인처를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월급의 일부를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함.

〈기타 의견〉

- 직업훈련 및 취업 처 인프라 부족 개선
- 지역 일자리를 발굴로 개인 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연계



### 3. 탈수급 이후 이행급여 전환의 한계

안건 3-1. 탈수급 이후 이행급여 전환의 한계	
관련배경	<p>○ 이행급여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 및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요청</p> <p>※ 14년 10월 예정인 맞춤형급여체계 변경 이후에도 이행급여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p>
관련제도	<p>〈이행급여 특례〉</p> <p>①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교육급여 지급</p> <p>②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로 처리되지 않은 부양의무자의 기 확인된 소득 및 재산 증가로 부양비가 증가하거나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보장중지 대상인 수급자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가구원 중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입원·재활 등이 필요한 자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있는 가구는 의료·교육급여 지급('14.9월까지)</p> <p>〈참고자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의 각종특례 내용 중〉</p>

〈제출자 명단〉

송명희, 신희선, 임영란, 최영숙, 이승우, 김근영, 황영호, 곽영수, 김연실

## 〈자립기반 마련 VS 역차별 우려〉

### □ 관련 상황

- 이행급여 특례제도가 자활자립(탈수급)을 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
  - 이행급여특례는 탈빈곤 유인강화, 복지 사각지대의 탄력적 해소등 all or nothing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탈 수급을 돕도록 하는데 적절한 제도임.
- 탈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수급자 조사에 비해 어려우며, 소득인정액 150%의 범위로 판단할 때 기존 수급자가 아닌 국민과 비교시 어느 정도의 차액이 발생 하는지 자료가 없는 상태임.
  - 1·2인 가족에 대한 1인 추가 150% 산정은 특례로 판단 될 수 있음.
  - 수급자에서 급여가 중지 되는 경우 소득인정액과 의료급여, 교육급여, 사회적 지원(이동통신요금 감면, 자활적금 등)이 포함된 소득 합산시 오히려 같은 가구원수의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 발생
- 실질소득 증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일용직, 비정규직 일자리만 선호하거나, 탈수급으로 수급중지가 되었을 경우 생활수준 유지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
- 현재의 이행급여특례는 기존 보장가구원에게만 적용됨. 기존 보장가구에 새로운 가구원이 추가(ex.혼인 등)된 경우 새로운 가구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초과될 경우에는 동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가구원의 수급지원이 중단됨.

### □ 현장 제언

-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가구』, 근로무능력자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전입 시 가구구성 요건 불충족으로 보장중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구구성 요건만 적용치 말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적용한 후 판정하는 것이 타당
  -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적용에 있어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과 관련 부양의무자 150% 신규소득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이 타당

- 근로 능력자의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 탈수급 자립기반 필요

### 〈희망키움통장과의 관계〉

#### □ 관련 현황

- 탈수급자에 대한 완충작용으로 이행급여에 대한 기대가 많았음.
  - 초기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이행대상자로 지원이 과증되었다는 판단이 많았으며, 현재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부양기준으로 한시적 보호로 사각지대나 보장에 대한 보편적 의미는 거의 없으며, 복지 체감도도 낮음.

#### ○ 사례

- 대상자는 이행특례수급자로 변경되어 생계급여 등이 중지되었음. 희망키움통장도 가입하였으며 만기시 주거비용으로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었음. 곧 이행특례도 종결되게 되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에 수반되는 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소득이 많이 부족함
- 이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모두 소진하고 다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한 상태로 회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됨. 아울러 희망키움통장도 중도해지하여 향후 소득이나 자산으로 잡힐 여지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형편임.

#### □ 현장 제언

- 이행급여특례자에게 현재의 희망키움통장형태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하고 일정 비율을 매칭받아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지원사업에 특례기간동안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 근로 유인 제공
- 수급자로의 회귀 유혹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급여에 대한 지원 시기를 획일적으로 2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수급자 중 많은 분들이 아이가 학교를 마치는데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아

서 다행이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은 오랜 우리 사회의 전통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의료비 관련〉

#### □ 관련 상황

- 의료급여나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의 욕구나 필요가 반영되는 만큼의 유효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다시 수급권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유혹이 강해지는 문제를 낳고 있음.
- 또한 질병으로 인해 목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음.
  - 이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는 시점에 대한 자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보험으로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지출 항목을 별도로 잡아야 하나 그러기에는 다달이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태라 이에 대한 고민도 깊은 형편임.

#### □ 현장 제언

- 의료급여의 경우는 교육급여와 다르다고 판단되며 긴급의료구호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큰 무리 없이 수급자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지출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교육과는 달리 의료는 어느 순간에 긴급히 발생할 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 필요

### 〈행정상의 어려움〉

#### □ 관련 현황

- 이행급여특례 진입은 가구별로 2회로 제한되어 있으나 행복e음에 자동 반영되지 않아 상담이력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일반수급자로 재진입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만 선별되도록 한다지만 이행특례의 사유에 있어서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사유에 따라 적용방법을 달리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오히려 민원이 자주 발생함.

○ 조건에 맞게 고의적으로 가구원 변동을 시켜 수급을 받을 수 있음.

□ 현장 제언

○ 이행급여특례의 2회 제한 적용이 행복 e음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소 수정되었으면 함.

○ 현재 이행급여 특례제도는 추정소득 부과, 수급권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따른 가구원 변동처리 등에 있어서 오히려 담당자의 무절제한 재량권이 남발되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지침을 두고 세부적으로 개별 예시를 제시하였으면 함.

〈역영별 적용범위 관련 개선〉

□ 관련 상황

○ 이행급여 전환에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기준점이 협소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있으나 전혀 부양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수급자 신청 또한 어렵고,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속하지 않은 질환을 앓고 있고 생계비가 전무하여 생활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함.

○ 교육지원

- 이행특례로 2년 동안 교육비가 지원되나 상위학교 진학 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존재하며, 미성년 자녀를 둔 한 부모 여성 가정의 경우 자녀를 돌봐줄 사회적지지망 부족 (돌봄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

○ 의료지원

- 낮은 학력과 직무능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열악한 근로환경 업체에 취업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우울, 알콜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상태로 취업 후 의료 관계 위협에 노출됨)

- 낮은 임금으로 오히려 수급자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수급권 재진입 우려되며, LH공사 매입임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거주지 이전에 대한 부담감 증가(근로 포기)

□ 현장 제언

- 교육지원 근로능력자에게 일할수록 유리한 제도 마련
  - 취업 후 생계비 일부지원 : 기존 수급금의 일정액 지급
  - 급여 체계 및 근로환경개선 :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장려세제
  - 수급자 취업 시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 성공금 지급
- 기존수급자 취업(탈수급)시
  - 아이 돌봄 제도 확대와 고등학교 졸업시기 까지 교육비 지원
  - 근로로 인한 건강악화 부분 지속적 의료 지원
- 이행특례 기간 중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 변동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수급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 공지
- 수급자 대부분 본인의 유형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안내문 발송 등 행정적 절차 필요
- 특례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을 산정 하고 사업주로부터 정직한 소득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일시적인 이행급여특례 및 한시적 보호 등의 정책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추진되면서 복지사각지대 및 탈수급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지속적인 제도 조속히 추진 필요

〈기타 의견〉

-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가구』에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 등이 전입했을 때에는 계속보장이 가능하나 근로능력이 전입했을 때에는 가구 구성 요건 불 충족으로 보장중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

어 있음.

- 이것은 근로능력자인 수급자가구가 이행급여특례수급자인 근로무능력자 가구를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게 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가족 등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농촌지역에서는 이행급여 대상이 거의 없으며, 생계·주거비 지원 없이 의료와 교육급여로 보호의 한계가 있어, 수급자들 실질적인 보호체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9월 한시 이행급여 대상자도 9월엔 또 다른 민원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4.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자율 재량 부족

안전 3-2.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자율 재량 부족	
관 련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나 급여 제공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격 및 기준 미달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li><li>○ 서비스 및 급여 지원에서 담당자 자율 재량의 부족으로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렇다면 자율 재량의 영역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요청</li></ul> <p style="text-align: center;">※ 사례와 함께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제출자 명단〉

노미경, 최강아, 최영숙, 이명숙, 김근영, 황영호, 김연실



## 〈자율재량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 □ 관련 현황

#### ○ 자율재량권 필요

- 각각의 세부적 상황에서 지침만으로는 서비스나 급여 적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재량권 확보가 필요함.

#### ○ 자율재량권 확대 반대 의견

- 재량권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으며, 자율재량권 확대는 권리와 함께 의무도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더 심각히 발생할 것임.
- 사회복지사의 자율재량권을 인정할 경우 민원회피식의 ‘묻지마 복지지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 현장 제언

- 제도의 정확한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필요한 경우와, 재량이 필요한 경우(긴급지원 등)가 구분 될 수 있음.

-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 판단되는 경우 제도권 내 위원회나 지역내의 협의체를 활용하고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 시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동거 관련〉

### □ 관련 현황

- (사례) CT는 법적으로 미혼이며 일일고용근로자임. 폭행으로 인해 입원치료 받았으며 입원 시 소득은 없었으나 동거상태이었는데, 조사결과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 현장 제언

- 최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동거

생활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을 별도 관리하는 경우 담당자의 판단으로 한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 필요

- 특히 가장 필요한 병원 이용시 입·퇴원까지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의료급여, 생계비를 일정정도 지원하거나 긴급구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 관련〉

#### □ 관련 현황

- 한부모 가정에서, 보호자가 자녀들의 학자금 준비를 위해 희망키움통장을 가입, 납부하던 중 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 자녀들은 대학과 고등학교 재학중,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로 그동안 납부한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받고 근로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은 환수되었음.

#### □ 현장 제언

-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희망키움통장이 가입자 사망으로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가구원이 학업중이거나 수급자가 유지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목적과 동일하게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재량권과 관련 위원회 개최〉

#### □ 관련 현황

- 재량권이 부여될 경우, 남용에 대한 우려와 재량권 행사할 경우 책임성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됨. 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도권 밖의 자원만을 활용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적·한시적인 지원에 그침.

## □ 현장 제언

- 생활보장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상시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기구로 생각되지는 않음(재량권 행사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의의를 하는 사회복지사는 그리 많지 않음)
-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도권 내 위원회를 활용
  - 또는 통장, 복지위원, 동복지협의체, 지역주민 확인 등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보호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재량권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및 지원이 필요

## 〈추정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 □ 관련 현황

- 과도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으로 차상위 계층, 비수급 빈곤층 존재하며, 사각지대의 가장 심한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 실질적 부양 능력과 상관없이 기준을 적용하여 부양의무자 마저 빈곤에 처함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 또는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수급 신청 포기 후 빈곤에 방치 되는 사각지대발생
- 진단 경계선 상에 있어 근로능력 여부 불명확한 자의 소득확인이 곤란할 때에도 일정정도 소득을 추정
- (사례) 현재 \*\*군은 인구의 30% 이상이 노인이며 그중 70% 이상이 독거노인임. 독거노인 중 상당수가 근로소득이 없어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일부는 자녀들과 연락이 안 되거나, 되어도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어 만성적인 빈곤에 노출됨.
  -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과 같은 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연계하려해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미달되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우선돌봄차상위 제도로 정부양곡, 푸드뱅크, 문화바우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근로자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로 기초수급 선정기준 초과로 이종고를 겪고 있으므로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현장 제언

- 복지대상자 등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민간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
  - 하지만, 농촌지역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의 자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 영역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제약 요소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뿐 아니라 민관 협약체결로 다양한 서비스 지원 가능한 세부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부양의무자 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적인 적용 필요
  - 수급권자 1인 가구일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 1인 가구일 경우 소득 1,568천원이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됨. 대도시에서 1,568천원을 가진 사람들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판단은 무리라고 봄.
- 실제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권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빈곤층으로 존재 하므로 가난한 부양자에게 부양책임을 맡게 하는 현 제도를 검토해 부양유도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근로능력 관련〉

□ 관련 현황

- 근로능력은 미약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자가 소유자로서 집을 전세를 주고 살면서 보증금은 생활비나 개인 사채를 갚는데 사용하여 증명을 할 수 없고, 부양의무자도 명확한 단절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의 재량으로 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없음.

## □ 현장 제언

-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도권 내 위원회를 활용한 다든지 통장, 복지위원, 동복지협의체 등 지역주민의 확인 등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호한다든지 사회복지사들이 절차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재량권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및 지원이 필요함.

## 〈획일적 수급 기준 등〉

## □ 관련 현황

- 지역과 세대의 다양화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보장수준
  - 장애인 : 노인이 된 부모에게 부양을 위탁해야하는 상황
  - 청년의 가족 생계부양 : 빈곤의 대물림
  - 1인 가구 : 기본적인 생활비용이 발생하여 현재 지급 받는 수급비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움
  - 출소자 : 사회적응과 대인관계 기술 부족으로 경제활동 어려움
-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여 95세 노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사례 발생
- 조건부수급 이행을 위한 자활근로 참여
  - 자활센터의 근로미약자와 수익을 내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음)

## □ 현장 제언

- 지역 차, 가족유형의 다양화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보장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장애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1인 가구, 출소자 등)
- 가족관계, 인간관계, 건강상태 등의 상담 시 얻은 정보를 통하여 빈곤으로부터 종합적인 권리와 보호 필요

- 정신병력, 알콜, 근로거부자등 자활근로 아닌 사회적 안전조치마련
- 예) 생계를 보장해 주며 의무적으로 교육, 또는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 (정신개혁 또는 알콜 치료 등 적극적 참여 유도)

### 〈자율재량 확대 반대 의견〉

#### □ 관련 현황

- 대부분 일선 사회복지담당의 업무 과다로 인해 적기에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음.
- 자율 재량이 확대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할 것으로 예상
  - 자율재량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름. 이러한 책임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리라 사료됨.
- 서비스 제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담당자가 시기적절하게 CT를 찾(아오)는지, 상담을 하는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CT의 눈높이와 복지서비스가 맞는지, CT가 자활의지가 있는지 등 이라고 생각함.
  - 아무리 좋은 복지서비스라도 CT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CT의 복지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 현장 제언

- 자율재량 영역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제도권 내 급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자율재량 확대는 반대하지만, 어려운 상황은 인지가 되나 마땅한 법정급여가 없을 때 제공될 수 있는 민·관 복지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이 필요함.
- 현 긴급복지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
  - 이는 위기상황이라는 정의를 내려 담당자의 재량을 허용하는 범위가 한계가 있는바 일시 지원에 대한 담당자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

으나, 복지전반에 대한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재량권 확대는 반대

○ 사회복지 담당자의 재량권을 인정할 경우 민원 회피식의 ‘묻지마 복지 지원’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사회문제 발생시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유로 재량권 확대를 반대함.

### 5. 중앙, 시군구, 읍면동, 복지관, 자활센터 등 전달체계간 협력제고 방안 (협력의 장애요소 제거 및 관계 재정립 사항 등)

안전 4-1. 중앙, 시군구, 읍면동, 복지관, 자활센터 등 전달체계간 협력제고방안 (협력의 장애요소 제거 및 관계 재정립 사항 등)	
관련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민간 및 정부복지전달체계간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음.</li><li>○ 이에 민관 협력의 장애요소는 무엇인지, 장애요소 축소 방안 및 전달체계간 관계 재정립방안 등 협력 제고에 대한 의견 요청</li></ul>

〈제출자 명단〉

이상복, 이승진, 송명희, 신희선, 임영란, 이명숙



## 〈민관협력과 민간 전달체계 개편〉

### □ 관련 상황

- 복지체감도 제고 및 부족재원 충당 방안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협력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협력 지원 조직과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업팀에서 민간시설(사업) 위탁관리 업무를 함께 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갑을관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부문의 협력경험의 부재와 이로 인한 이해부족과 함께 민간의 공공행정의존, 협력에 필요한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함.
- 민관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인적, 물적 기반이 부족하며, 지역자원정보공유 등 민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의 부재로 협력 활성화가 어려움.

### □ 현장 제언

- 전달체계 개편 시 반드시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를 병행하여 개편 필요
  - 공공과 민간의 역할정립을 할 필요 있음. 예를 들어, 사례관리 업무에 있어 희망복지지원단은 총괄기능과 사례배분의 역할을 중심으로 업무재편, 종합복지관 등 민간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지원
  - 신규정책 또는 서비스개발 시 전달체계를 사전 검토하는 장치(기구)를 마련하고 여기서 공공과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민관협력을 반영한 평가시스템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지원기반 마련 필요
- 현재 민관협력의 법적인 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분야별 각종 위원회에 재정비 필요하며, 협의체에 심의의결기능과 아울러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 〈민간 고유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장려〉

### □ 관련 상황

- 행정기관은 안정되고 보편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사회복지시설기관

은 기관 단체의 특수성에 기인한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협력체계의 모순이 들어나고 있음.

-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의 자생적 발생이 아닌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보편적 주류를 이루며 민간사회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이 보편 일률적이며 도시화에 적합한 프로그램임.
- 사회복지기관의 사업이 기관별로 특성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적으로 보편화 및 일반화가 되어 가고 있음. 예를 들어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센터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각기 다르나 인근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모방하여 관례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짙어가고 있음.

□ 현장 제언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중앙, 시군구, 읍면동)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위해서는 상호간 연합체 구성 필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사회복지기관과 행정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등의 문제해결 창구 마련 필요
- 프로그램 개발에는 보편적인 전국적 공통단위 프로그램 개발은 중앙부처에서 개발 지원하여야 하며, 특수성에 기인한 프로그램은 자율성을 대폭 이양하여 자율적인 프로그램 개발 관리 여건을 마련이 필요함.
- 규모기준의 일률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기본 지원 규모를 제외하고는 독창적이고 특수성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한 사업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업비 운영 지원을 하는 등 보조금 지원 방식이 달라져야 함.

〈지자체와의 관계〉

□ 관련 상황

- 위탁운영방식제도에 따른 위계관계로 인해 자율성을 지닌 협력적 관계를 제고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위탁기관 계약으로 갑을 관계 성립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 어려움 존재

- 공공기관의 사회정보통합시스템 개인정보관리 강화로 인해 민간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행정기관의 탄력적인 태도 및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마련이 요구됨.
- 중앙정부, 시군구, 민간 기관 간 실적관리의 중복성이 존재함. 민간기관의 자원에 대해 통제, 관할하려는 시군구의 태도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됨.

#### □ 현장 제언

- 민관 협력기관간의 자율소통 강화 및 민간위탁제도의 혁신개혁
- 자치구별 지역복지협의체와 같은 민,관이 함께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조직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조직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함.
- 민, 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함.
  - 민,관이 함께 협력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워크숍,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함.
-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자원 관리, 실적에 대해 조율 할 수 있는 설명회 개최(중앙정부 주관)

### 〈원스톱 맞춤형복지서비스 협력〉

#### □ 관련 상황

- 사회복지 욕구는 “기본적 생계유지”의 범위를 넘어 전문적이고 적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욕구로 확대되었음.
  - 공공부문은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표방하기에 이르렀고, 역할의 한계를 인지하고 동반자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참여가 절실하게 되었음.
- 하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대상자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문턱이 높다”는 식의 심리적 접근성도 떨어진 상태임. 민간부문의 경우도 영리의 목적보다는 공익적

측면을 염두해야 하고 윤리적으로 서비스를 행하여야 하나, 영리 추구와 실적 경쟁에 의한 양적확대에 치중하는 인상을 주고 있음.

- 서비스 영역의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이 경쟁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있음.
- 원스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정보 부재는 담당자의 지식과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더구나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다양한 정보요청 해야 하는데, 정보 제공은 제한적이므로 마찰을 빚는 경우도 발생함.
- 중앙정부 제도권 내 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다양성으로 중복 내용이 산재함.

#### □ 현장 제언

- 공공부문의 원스톱 맞춤형복지서비스 시행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임
- 우선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을 제고하는 소통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결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가 없거나 활동이 미약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각 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실무로의 연계가 안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그에 따른 업무부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함.
- 공유가 가능한 범위에서 공공과 민간의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정보교류의 활성화 등이 제도적으로 체계화 되어야함.
  - 더불어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뒷받침되어야 함. 실질적인 공유 없이는 민관협력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됨.

### 〈긴급상황 발생시 협력 관련 사례〉

#### □ 관련 상황

- (사례)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어떤 독거노인을 요양보호센터에서 노인들

봄서비스(바우처서비스)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었음. 할머니와 얼마동안 연락이 안 되어 가정방문을 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함.

- 요양보호센터에서는 가족관계를 전혀 모르고 확실한 내용도 아니기에 부득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먼저 요청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함.
-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 주민센터에 알리고, 가족 연락처 파악을 요청했으나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민센터에서 직접 연락하겠다고 함.
- 결국, 119에 신고함. 개인 정보 도용의도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요청자의 신분이 확실한 경우 우선 조치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함. 특히 영구임대주택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 현장 제언

- 최근 금융기관 등에서 정보 유출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불가피하게 서면 요청이 아닌 유선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자의 신분과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고 알려주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민관기관에서 공공기관보다 개인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민·관이 서로 협조체제가 잘 구축된다면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도 원활하여 복지체감도가 향상되고, 공공복지도 좀 더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6.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관련 개선방안

안전 4-2.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관련 개선방안	
관 련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복지제도 부정수급 문제는 매 정부마다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신설 등을 통해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에 힘을 쏟고 있음.</li><li>○ 부정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다른 각도에서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 부정수급 업무 관련 애로사항, 향후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 등 의견 수렴 필요</li></ul>

〈제출자 명단〉

이상복, 이승진, 송명희, 황영호, 곽영수

## 〈부정수급 전담 부서 필요〉

### □ 관련 상황

- 정부에서는 복지·고용 등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5대 핵심 분야로 선정,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신설 전방위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사례는 매년 발생하여 제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불신과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됨.

### □ 현장 제언

- 복지급여 지급부서와 부정수급 판단 및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환수 부서가 동일하여 부정수급 판정 및 환수에 소홀한 경향이 있으며, 인식제고를 통한 부정수급에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필요
  -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며, 조사인력을 확충하여 복지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 강화 필요
- 복지수급자 변동알림 기능강화 - 급여 중지 사유 발생시 자동중지 기능 적용
-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 및 비밀 보장을 해 주고, 정확한 신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실시
- 부정수급을 조사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부정수급조사전담자를 두거나 담당자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신분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홍보〉

- 안내문 배부보다는 방송 매체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 보장비용 징수 및 처벌에 대한 시각적인 홍보가 필요함.
- 종전에 문화누리카드나 기초연금 시행 시 방송사에서 홍보하여 그 효과가 매우 컸음.

-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복지관련 급여 신청 등을 홍보함에 있어 급여신청 정보와 함께 부정수급 관련 사항(처벌 등)의 정확한 홍보 필요

## 〈의료급여 관련〉

### □ 관련 상황

- 자녀들이 성장하여 취업했거나 결혼 등으로 자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수급이 중지되고, 부양비 부과로 인해 수급비에 반영되면 자녀들과의 연락두절 상태라고 소명서를 제출하여 보호가 지속됨(소명서만 제출하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거의 보호됨).
- 부정수급 의심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때 소명서(서식), 최근 1년간 수급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서를 제출받아 관리팀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여러 개의 은행 통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도 있음.
- 부양의무자가 다른 가구원 명의의 통장에도 입금을 할 수 있으므로 입출금내역서를 통한 지원 여부 확인은 근거 자료로써 매우 미약하다고 사료됨.

### □ 현장 제언

- 부정수급자를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호중지 및 급여 보장비용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아님.
  -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복지급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홍보시 부정수급(권)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홍보 ②부정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
-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자녀들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음에도 적용받지 않고 의료비 혜택이 훨씬 많은 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 포함) 지원을 받고자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관련하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는 부양을 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으면 함(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외면한다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인데, 부양가족이라 하여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됨).

- 예컨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적용 시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부양의무자의 의료비공제나 가구원 소득공제 대상자 명단에도 이중 등재되면 부양하고(부양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 기초수급자가 실제 부양받지 못하면 부양의무자가 의료 및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세제 적용의 강화가 필요함.

○ 의료보호 급여혜택을 위한 부정수급사례가 가장 많이 있음.

- 수급자혜택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의료급여이며 이에 따른 부정수급의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의료보호수급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봄.

#### □ 현장 제언

-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강화와 고발이후 행정처분까지 시한 단축과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별도 처리부서에 업무 전담 필요
- 수급자격에 관한 사이버상의 정보노출 및 남용으로 인한 편법사례와 방법 등의 공유를 차단하여 부정수급자 양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의료비 부담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하여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감시 강화보다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함.

###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 □ 관련 현황

- 부정수급 예로 가족 간에 왕래가 있음에도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소명서 또는 부양기피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유하고 있던 금융재산 등을 타인들의 명의로 옮긴 후 신청하는 경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들로서는 공적자료 등으로만 사실 확인

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관련규정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장 제언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견해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했다가 적발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패널티(벌칙)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부정수급신청자로 적발된 경우 현재로서는 복지급여 보장중지와 지원된 급여회수 등의 조치와 처벌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태료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 이러한 방법 중에 보장중지 및 비용회수는 가능하나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정수급자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고 봄.
- 패널티(벌칙)를 적용 방법을 지침 등에 부정수급신청자에 대해 패널티(벌칙)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시킨 후 적용토록 해야 할 것임.

〈정확한 지침제시〉

□ 관련 상황

- 복지급여와 관련한 지침 내용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 근시안적으로 관련지침을 수정함으로 이내서 오히려 부정수급자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함.
  - 예를 들면, 수급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 지난해까지는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내용이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지방세법상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률과 지침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수급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용어 자체가 주관적 판단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일임되어 있음. 또한 대부분의 경우 “고의성” 판단이 어려움.

□ 현장 제언

- 복지급여와 관련한 지침내용의 정확한 사례제시 및 신속한 수정 필요(중앙에서 지자체의 의견에 대해 신속하게 접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 필요)

〈부정수급 대응에 대한 소극적 자세〉

□ 관련 상황

- 복지대상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부정하거나 조사에 대한 저항이 거센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제도적으로 담당자의 신분보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때로는 복지대상자가 인격 모독 및 신변위협을 가하기도 함.
-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음. 보장증지 또는 급여 감소 처리, 보장비용 징수,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 및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절차의 번거로움, 대상자의 격렬한 저항, 낮은 징수 실적 등으로 절차 진행에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 현장 제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 변동사항이 즉각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 발견이 어려움. 따라서 신청단계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확실한 주지가 필요하고 6개월이던 확인조사 주기를 상시조사로 전환하여야 함.
- 부정수급에 대한 정의와 조사, 권리구제 등에 대한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여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함.
  - 각종 법률이나 지침에 부정수급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실정임. 그나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는 얼마 되지 않는 추상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음.
- 복지대상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해 실질적 권리구제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음.



<부록1> 제1차 서면의견(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관련 주제안)

**의견1: 복지급여 신청 접수 및 등록 절차 준수(업무통일)**

- 현 실태(대다수 지자체)
  - 읍·면·동에서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접수하여 스캔등록후 시·군·구(통합조사팀)로 신청서류를 이관 민원 접수후 처리
  
- 문제점
  - 읍·면·동에서 민원이 신청한 날짜와 시·군·구(통합조사팀)에서 실제 접수한 날짜가 1~3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해결 방안
  -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등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
    - 읍·면·동에서 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민원등록(접수번호 자동부여)
    - 민원인의 신청일자와 접수일자 동일

☞ 2014년 읍·면·동 사회복지업무안내(65페이지)

**[신청등록]**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 제출된 각종 서류는 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
  
- 정보시스템에 등록시 민원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 민원 접수처리(행복e음), 접수확인(임원행정시스템), 처리완료(행복e음)
- 신청일자는 급여기준일, 접수일자는 민원처리기한 산정 기준일이 됨

###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에 한함) 제출일을 ‘신청일’로 함
  - 복지공무원이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
- 시·군·구 통합조사팀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즉시 조사 실시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4페이지)

### [신청절차]

- (신청안내)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 (신청서 작성) 공통신청서 또는 개별사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제공
-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등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행복e음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토록 함
- (신청 접수) 읍·면·동 접수 후 시·군·구로 송부

☞ 2014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14페이지)

### [신규신청]

-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 (신청서) 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

여 반영

-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 반영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회원권 등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 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부여

## 의견 2: 개편 주거급여, 안정된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 1. 현황

#### 1)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주거급여 개편 추진
- 2014.1.24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주거급여법 제정, 2014.10.1시행
- ※ 주거급여법 제 6조(보장기관)2항: 수급자결정, 급여업무⇒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조사실시(기존수급자 임대차 및 주택상태등 사전조사)
- 임차가구: 14.3월 ~ 7월(신규 8 ~ 9월), 자가가구 14.7월 ~ 12월(신규 15년 1월 ~ )

#### 2) 안전행정부

- 지자체 주거복지업무 인력운용현황전수조사 실시, 주거급여개편제도시행에 대비(안행부 자치제도과 - 1421(2014.4.22)호, 공문 관련임

#### 3) 지자체

- 주거급여 업무는 지자체 내 업무조정을 통해 주거복지팀(신설)또는 주택(건축)부서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와 협의중(2014.2.18일 공문)

### 2. 문제점

- 2014.4.4. 시범 사업, 10월 본 사업 시행예정이나 업무추진부서 미결정
-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없으며, 보편적 복지 전환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업무 가증될 가능성 있음.
- 안행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원확충에 대해 미진
- 현 사회복지업무 담당의 업무량 파악, 증원없이 복지사 재배치, 개연성 있음.
-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내용없어 부서간 갈등(사회복지과↔생태도시과)



- 타시군 추이 관측 후 업무 분장 예정(시·도 동일한 문제점)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미흡

### 3. 방안

- 주거급여의 안정적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조정 및 분장을 지자체에다 떠넘기지 말고 해당 부처의 단호한 의지 요구
- 업무추진 진행사항에 대해 지자체 업무담당자에게 적극적 홍보 필요

### 의견 3: 고용-복지 연계의 안정된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 1. 사업배경

- 자활사업 참여 가능한 대상자 DB부족으로 자체적 추가 발굴 필요
- 적극적인 자활사업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한 자활 참여자 누락 방지

#### 2. 사업개요

- 대 상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 기초수급자 중 자활 연계 가능 자 사업 안내 및 교육 실시
- 사업방법 :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 읍면 집합 홍보 및 교육 등

#### 3. 현황

#####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대상자	① 조건부수급자, 차상위(150%) ② 취업취약계층: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여성가장,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숙인, 출소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만15세~)	
취업지원절차	1단계 진로·경로설정 (1개월 내외)	5-8회 개별상담 직업심리검사 개인별취업지원계획수립
	2단계 의욕능력 증진 (6~8개월)	무료 직업훈련 참여(내일배움카드) 단기일자리제공(시급:5,210원)
	3단계 집중취업알선 (3~6개월)	동행면접 집중취업알선(고용보험가입 필수)
지원내용	○ 단계별로 월 20만원~40만원 참여수당지급 ○ 무료직업훈련지원: 내일배움카드(300만원 한도내) ○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최대100만원) ○ 취업시 최저생계비 60%이상 소득시 <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 ○ 탈수급시 2년간 이행급여특례(교육, 의료급여) 지원	

## 2) 희망리본 (보건복지부)

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3년 이상 자활근로 참여자 ③ 취업성공패키지 중도 탈락자	
취업지원절차	밀착사례관리 보건복지서비스	기초상담(심리상담연계) 개별·기구 취업장애물 제거 복지서비스연계
	직업훈련등 취업지원	직업훈련지원
	사후관리	직장적용 및 취업유지 지원
지원내용	교통비 식비등 실비 최대100만원 지원 취업시 최저생계비 60%이상 소득시 <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 탈수급시 2년간 이행급여특례(교육,의료급여) 지원	

## 3) \*\*군 지역자활센터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업지원절차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자활기업창업			
	구분	급여단가	실비	표준소득액
	시장진입형	32,700원	3,000원	850,200원
	사회서비스형	29,300원	3,000원	761,800원
	근로유지형	21,080원	3,000원	548,080원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지원내용	자활급여, 내일키움통장, 자활기업 창업지원			

## 4. 문제점

- 현 자활에 관련된 고용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로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 및 사업 참여를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하기 때문에 자활근로 및 자활사업(고용)참여율이 높은 반면 탈수급을 원치 않는 수급자는 수동적

#### 인 자활사업 참여 및 취업의지 미약

- 자활사업 참여(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등)시 적정한 직업훈련 인프라 부족, 농촌형에서는 취업처 발굴 또한 쉽지 않은 상황
-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학원이 없어 대상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거리 및 차비 부담(자활 참여 부담)
- 지역적 특성(농어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생계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 자활 참여도 다른 지역보다 낮음.
-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지역지활센터 등 재참여 가능

### 5. 방안

- 수급자들 의식 전환 필요(탈수급에 대한 부담감등)
- 직업훈련 및 취업 처 인프라 부족 개선
- 개별급여 제도 시급(의료급여가 필요한 자는 의료급여만, 생계급여 필요한 자는 생계급여만 지급)
- 탈수급자의 안정적 자활조성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확대
- 국비지원 학원 도입
-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여 개인 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연계
- 자활근로 확대 및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통한 자활능력 배양. 표준화사업 위주로 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적극 발굴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 의뢰,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특화프로그램(희망리본, 자활센터등)에서 집중관리로 재도전 도모
-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종료 후 재참여 불가능 안내 및 재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 추정소득 부과

## 의견 4: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에 관한)

현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책임성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위임되어있는 구조이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한 일관된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각 지방정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복지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주요 재정원으로 지방정부의 환경과 정책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발달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이 민간전달체계의 최일선 역할을 해왔으며, 공공전달체계의 경우 최근 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의 역할이 강화되며 공공 전달체계의 최일선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해졌지만 지역사회복지관은 아직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시군구 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민간전달체계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있음은 물론, 근래에 문제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발생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전달체계로서의 역할과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 전달체계는 8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민간기관의 상호협의를 통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서비스간 연계가 부족하여 다양한 민간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민간부문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에 의존하며, 낮은 보수로 인한 소진과 이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된 사회복지기관들 사이에 효과적인 연결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체계 사이의 연계, 협력 미흡에 따른 민간자원의 발굴 및 이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홍보를 비롯한 정보제공을 충분히 지원하여 서비스내용과 수혜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의 최일선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상황을 극적으로 전환

시켜줄 대책이 요구된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시설로서의 체질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그동안 사회복지관이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복지업무를 담당해왔는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지는 사회복지 인력의 저임금을 담보로 발전해 왔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이나마 지탱되어온 것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몸 바쳐 희생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력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관료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복지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의 문제이다. 기존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전적으로 관에 종속된 구조적 한계를 지녀왔다. 이로 인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왔다. 이러한 종속적 구조 틀 속에서는 전문적이고 유연성 있는 서비스체계가 구축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장들의 위상을 최소한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위상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관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지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중요함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아무리 훌륭한 복지정책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일선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는 향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공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력의 처우와 신분보장, 보수교육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특정조직이나 지향의 인물에 편중되게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실질적인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구조를 지향하여야 한다. 실재는 관주도이면서도 참여에 있어서는 민간이며, 공공부문 실무자의 참여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실무그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다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활동이 보장되도록 하고, 수직적, 수평적 의사소통 채널뿐만 아니라 연석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과 민관구분이 없는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에 대한 업무 표준화 및 지속적인 지도 관리의

필요이다.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에 의해 사회복지 수준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제 장치가 필요하며, 역설적으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중앙정부 역할 강화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섯째,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위한 장의 마련이다.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면서도 어려웠던 부분이 지역사회복지업무를 기획하는 부서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 현장의 소리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복지계의 지방이양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은 그것을 시행 할 수 있는 공공, 민간, 지역사회의 준비된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성공 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공공부분(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전달체계를 공공전달체계와 대등한 파트너로 육성·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DB 구축 및 기존 전산프로그램이 호환 가능하도록 하거나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통합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 전달체계의 법적 권한강화를 통하여 민간 전달체계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신분을 보장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법적 후견, 대변, 클라이언트의 동의하에 관련 정보를 공공전달체계와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 의견 5: 현,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현 상황

현재의 사례관리 시스템은 중앙정부 관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민간기관 역시 자체 시스템 내에서 기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즉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각 서비스 영역에 배치되어 있는 민간기관들이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례관리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기관 자체적으로도 사례관리라는 사업영역을 별도로 설치하여 직접서비스 외에 의뢰 및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 시스템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2. 문제점

#### 1) 민과 관의 역할 중복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앞서 언급했듯이 희망복지지원단의 주업무인 사례관리업무를 민간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민간기관은 직접서비스 지원 외에 사례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례관리라는 전달체계가 유행처럼 번져 각 복지관마다 사례관리팀이 개설되고, 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규모가 큰 복지관들의 경우는 인원배치에 있어 다소 여유롭겠지만 소규모 복지관의 경우,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부서는 기존에 실시해오던 다양한 직접서비스 외에 사례관리라는 간접서비스 영역에 대한 부담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부담은 업무의 중심을 어느 영역에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만들고 있다.



## 2)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복지사각지대 발생)

이러한 개별 사례관리시스템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지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위 대규모 행사, 예를 들어 김장김치 지원, 명절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의 중복 문제 등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운영되는 각 영역의 서비스 지원내용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의 대상자에 대해 동종의 서비스가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중복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누락 문제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통과된 세모녀법을 필두로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 3. 개선방안

### 1)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의 운영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민과 관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희망복지지원단과 각각의 민간기관들이 대상자의 정보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산시스템의 준비 및 실행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사례관리시스템 내에서 대상자 및 각각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의 실현에는 몇 가지 준비가 따른다.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의 실천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기관에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민감한 자료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개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개인정보 관련 모든 자료들에 대한 공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기본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정보와 서비스 내역 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유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2) 민과 관의 역할 정립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의 실행으로 민과 관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분장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영역에 있어 간접서비스 부분은 희망복지지원단이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각각의 민간 서비스 기관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직접 서비스 지원에 집중하는 형태로의 모델 정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희망복지지원단과 민간기관 각각의 역할 분담에는 그에 따르는 적절한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의 규모 상 각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전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는 예산채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민과 관의 적극적 협력체계, 즉 형식적인 지원체계로서의 기능이 아닌 동반자적 입장에서의 협력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일부분이겠지만 갑을관계로서가 아닌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원, 협력할 수 있는 수평적 관계에 서서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 4. 제언

앞서 언급했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는 통합사례관리시스템 내에서 민·관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실천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정수급자 뿐만 아니라 특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의견 6: 사회보장제도관련 토론 주제와 논의의 필요성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업무의 전달체계인 전국 지역자활센터와 민간기관에서는 정책의 흐름 방향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중사하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사회보장제도관련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상담사인 내가 생각하는 복지란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여 근로를 통한 성취감과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노동유인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지원 사업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과 사회 빈곤층의 해결도 어느 정도 이루어 질것이라는 생각이다. 사회보장제도나 법이 취지에 맞게 개편되고 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형태로 빈곤층의 자활,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일할수록 유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취업으로 인한 탈수급의 두려움을 없애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본 취업지원 상담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업 상담 시 충분히 일할 능력을 갖춘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던 부분을 잃게 되어 취업을 하기 전 보다 오히려 더욱 빈곤해지는 결과를 낳아 취업을 기피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급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부분은 교육비와 주거비, 그리고 의료비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취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자녀의 교육비나 중증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 그리고 현재 수급자의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지원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취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보통 인적자원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란 열악하고 불안한 일자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 없이 그 들을 취업시장에 뛰어들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복지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취업성공수당이 단계별로 지급되고 채용업체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같은 금액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때 업체와 참여자에게 4대 보험료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다면 취업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어 결국 취업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에게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일자리에 취업한 참여자에게 4대보험료 공제 금액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4대보험료 지원 부분이 명시 되었을 때 채용업체나 구직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급하게 작성한 의견으로 부족한 주제를 제출하고자 한다.

## 의견7: 사회보장제도 관련 토론 주제

### □ 제안제목

: 금년 10월에 시행되는 주거비지원제도에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팀 구성원의 역할(업무분장)건

### □ 제안사유

- 금년 10월에 시행되는 개별급여의 추진배경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년이 경과 하면서 제도에 안주하는 “빈곤함정”의 발생과 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가 개별급여제도로 변경됨.
- 이에 따라 기존 생계급여와 함께 지급하던 주거급여(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법)는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주거비지원제도(국토교통부, 주거급여법)로 확대 발전됨.
- 아울러 수혜자도 기준의 완화로 현행보다는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시·군·구에 주거복지팀 신설 또는 기존 업무팀에 인력을 보강하여 제도를 수행 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주거복지팀에는 행정, 건축, 복지직공무원, LH공사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업무의 통합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팀의 인력구성에 따른 역할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 할 것으로 보아 논의가 필요함.

## 〈부록2〉 1,2차 오프라인 토론 회의록

### 2014년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주제선정 회의 및 위촉식 회의록(1차 오프라인 토론)

1. 일정: 4월 30일(수) 오후 4시
2.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명단〉

강전하, 남궁명, 송원찬, 이상복, 박철상, 이승진, 이동형, 김정희, 신희선, 김채연, 정완출,  
임영란, 최경애, 최영숙, 이승우, 황영호, 곽영수, 김연실, 김영숙, 염옥경, 조영정

#### 1) 회의 개최

- 사회보장 모니터링 위원간의 상호 의견교환 및 포럼 주제에 대한 개괄적 논의
  - 사회보장 모니터링 위원간 상호 의견 교환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카페 등)의 필요성. 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 포럼을 통해 발간된 정책 자료집은 위원들과 공유 예정
  - 사회보장 영역의 확대로 노인, 아동과 같이 정책대상이 다양화 되었으며, 사회 정책연구본부가 다룰 수 있는 이슈의 영역 또한 확장되었음. 총 7차의 포럼 및 서면 의견 제출을 통해 올해 과제의 방향성을 찾고 내년에 더 구체적인 주제를 결정할 예정

#### 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포럼 이슈 논의

-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관련 일선 현장에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지역별 현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의 주제안 제안

-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사례에 대한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함.
- 지역마다 서비스의 수준이 일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 및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희망복지지원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정립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시군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읍면동 단위로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희망복지지원단과 관련된 연계서비스가 가장 이슈화 되고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이 불분명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에 대한 시군구 단위의 준비가 미흡함. 일례로, 주거급여가 국토교통부로 이전되었는데도 시군구 단위의 업무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주거급여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대한 대응적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기초보장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자활의 문제점도 역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현장뿐만 아니라 연구자도 마찬가지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근거가 필요함. 그 근거가 되는 자료, 즉 일선 현장에 대한 사례를 모니터링단에게 요청드리는 바임.
- 고용상담을 진행 하다보면, 서비스 이용자에게 다양한 보건·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정신건강 문제 등). 이들 이용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제한적이며, 이는 성공적인 취업을 이끄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 복지부 연계 서비스 제공이 취업률을 높이는데 필수적임.
- 자활센터 이용자들에게서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취업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 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개별급여로의 전환에 따른 생계급여의 소득보장 수준 및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전환 관련 이슈 발생. 취업 성공률 위주의 편향된 자활의 성과측정방식에서 사회적 가치중심의 성과측정방식의 도입 관련 논의가 필요함.
- 센터 내에서 고용보험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복잡한 시스템에 비해 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불분명하다는 문제. 자활근로사업과 고용보험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각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협의체의 거버너스 기능에 대한 모니터링, 제 3차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실효성 문제, 자원의 연계 및 전달체계,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에 대한 방향성에 검토가 주요 관심사
- 자활, 의료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근로의욕고취 및 탈수급 유도가 최대 관심. 수급가구의 자녀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개선이 주요 고민
- 수급탈피 기피에 대한 문제는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10월 중)으로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임. 하지만 개별급여로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은 여전히 남아있음.
- 복지관련 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숙지가 어려움. 사회복지관련 전문 인력의 배치 및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또한 민관협력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진주시는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어 복지제도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 제도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기초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보호가 필요함.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역모기지론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이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를 해주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관련하여 선지급 후조사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를 먼저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자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제도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문제

- 긴급복지지원 제도 관련하여 실제 가정방문 없이 서류로만 위기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증빙서류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 또한 세모녀 사건 이후 악성민원 발생 빈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담당자의 업무장애는 다른 민원을 상담하지 못한다는 문제. 또한 악성민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와도 연관되며, 이는 공공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문제점으로 부각됨. 현장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사각지대 발굴이 주요업무이며, 2013년도의 높은 수급탈락률로 인해 수급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 많았음. 수급자격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3) 향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이슈 정리 및 향후 계획

- 향후 논의가 필요한 주요이슈
  -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율재량 정도
  - 긴급대응 서비스 제공의 취약점
  - 전달체계의 잦은 변화와 이에 따른 혼선
  - 수급자와 신청자에게 고지할 내용과 고지한 내용에 대한 형식화에 대한 논의
- 현재 구성에서 보완 가능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위원 추천 요청
- 서면 의견 제출 시 관련사례 포함 요청

## 2014년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워크숍 회의록

### (2차 오프라인 토론)

#### 〈참석자 명단〉

노미경, 송명희, 김성희, 김정희, 최강아, 최복렬, 이승우, 황영호, 곽영수, 김연실, 김영숙, 염옥경, 조기은

### 1) 사각지대와 긴급대응서비스 제공의 취약점에 대한 논의

#### □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다양한 개념 및 정의

- 수급 자격조건을 만족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계층이 사각지대라는 의견과, 수급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제도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사각지대라는 의견 존재
- 현실적으로 근로능력이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회복지사의 역량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불가능
  - 탈수급 의지가 없어 빈곤에 머무른다면, 그 역시 사각지대로 해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발굴 및 자활사업 참여 유도 역시 사회복지사의 역할
- 제도권 안에 있는 대상자라도 지역사회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사각지대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에 동의하며, 가치관과 업무 영역에 따라 사각지대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가질 것이라 생각함.

#### □ 사각지대 발굴의 어려움

- 최근 현장에서는 사각지대 발굴에 초점을 두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상담 및 지원을 의뢰한 가구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지역 복지증진에는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사각지대 발굴보다는 사례관리를 통해 사각지대 진입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해야 함.

- 수급자가 아닐지라도 1회라도 상담을 받으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 긴급복지제도의 실효성 관련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역 내 예치되어 있는 금액으로 운영되며, 예치금이 고갈되면 지원불가

○ 20~30만원 정도의 소액지원으로 위로금의 역할이 크며, 단기지원이라는 제도의 특성으로 지원금액의 수준을 떠나 탈빈곤에는 크게 영향력이 없음.

○ 민간기관과 자원 발굴 경쟁구도가 형성되기도 하며, 민간에 제공되어야 할 지역자원을 공공에서 독점하는 경우도 있음.

○ 긴급복지제도가 적용되는 6가지 위기 상황 외의 다른 위기 상황을 추가하거나, 선지원 후보완 법칙을 적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함.

## 2) 복지와 고용(자활 및 고용지원)간의 협력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개선방안

#### □ 부처간 유사사업의 원인

○ 희망리본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제도상으로 개별적인 목적과 대상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처간 불필요한 실적경쟁으로 서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사한 형태로 변형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 □ 사업의 효율성 강화 방안

○ 취업성공패키지는 외부취업자에게 6개월 동안 취업성공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하는데, 이 때문에 6개월~1년 사이 취업자가 자활프로그램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활 참여 대상자에게 지급되던 장려금을 외부 취업 성공 사례에 제공을 제안

- 하지만 실제로 외부취업이 불가능한 사례도 존재하며, 이들에게는 실적위주의 성과 측정보다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초점을 뒤야 함.
- 자활센터내 공익형 사업장이 필요하며, 일반 외부 취업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이 공익형 사업장 내에서 자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이유 등으로 근로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이 때문에 취업보다는 자립 또는 근로의욕 유지 및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함.

□ 고용과 복지 연계관련

- 주민센터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관 부족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 자활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므로,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도 지자체와 긴밀한 체계 구성이 필요
- 고용센터, 자활센터, 지자체의 주기적인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이용자의 중복 상담을 막고, 서비스 제공자들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3) 탈수급 이후 이행급여 전환의 한계

□ 특례제도 확대 동의 및 이행급여 특례제도의 보완점

- 특례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특례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 교육, 주거, 의료등 개별적 가구의 문제가 탈수급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각종특례제도를 늘려 이러한 개별적 가구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보완점으로 이행급여특례제도 전환 시 유형변경통지서에 이행급여제도에 대한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이용자가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사회보장통합관리망에서 이행급여특례제도 수급 횡수 기입란이 없어

대상자의 이행급여 수급 횟수를 알기 어려움. 이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함.

- 이행급여특례제도는 희망키움통장사업과 연계되어 탈수급에 유용한 사업임, 하지만 희망키움통장 만기수령자의 제도권 재진입을 막는 지침 및 사통망내 제어장치가 필요함.
- 하지만 희망키움통장 만기수령자가 제도권내로 들어오는 것은 정당하며, 이를 막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 □ 이행급여 및 각종 특례제도 도입반대 의견

- 기존시행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특례제도가 과도하게 존재
  - 이행급여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의 경우 차상위제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비도 다른 제도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행급여는 중복적인 제도
- 서울시는 특히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복지부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의 중복문제가 더욱 심각
- 행정적·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유사사업에 대한 연구 제안

#### □ 시사점

- 적용범위 및 보장수준의 확대를 통해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특정대상에 자원이 집중된다면 소득역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함.
- 또한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급여별로 각기 다른 기준선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례제도 운영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음.

### 4)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자율재량 부족

#### □ 사회복지사의 재량권 확대 의견

○ 전문가로서의 자질 배양을 위해 재량권 확대는 필요함

□ 사회복지사 재량권 확대 반대 의견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적으로 이미 사회복지사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담당자가 필요성을 느낀다면 대상자의 조건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장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더 이상의 재량권 확대는 필요치 않음.

○ 재량권의 수준은 개량이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재량권 확대는 어려우며, 다만 개별 사례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특례제도를 마련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재량권 확대는 수급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의 지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이들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임.

□ 시사점

○ 가치관과 연결되는 문제이며, 원칙(매뉴얼)과 탄력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 해외 사례와 현장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

**5) 향후 일정 관련**

□ 워크숍 논의 예정이었던 '전달체계간 협력 제고 방안'은 9월 중 제4차 서면의견으로 취합예정이며, 10월 중 마지막 포럼을 가질 예정

□ 워크숍 회의자료는 모니터링단과 이메일로 공유 예정이며, 향후 제출하신 서면의견에 대한 수정을 요청드릴 예정

□ 취합 서면의견 및 회의 결과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 발간 전후 시점에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회의가 이루어질 예정